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을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he Evaluation Standard for the Law School : Focusing on the Evaluation Clauses of Law School Library

정 재 영(Jae-Young Chung)*

<목 차>

- | | |
|-----------------|------------------------|
| I. 서론 | 2.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의 방향 |
| 1. 연구의 목적 | III.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기준 분석 |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평가기준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II. 이론적 배경 | 2. 기타 |
| 1.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성 | IV. 결론 |

초 록

복잡한 법적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가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된 평가기준, 평가매뉴얼, 질의응답집과 평가수행과정에서 실제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평가항목 중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조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조항의 경우 일률적인 양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보다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하고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특성화를 비롯한 발전방안의 구상 및 실천, 그리고 대학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운영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대학원의 기타 시설들과 함께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모범사례 발굴을 통해 각 대학원에 표준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키워드: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인가기준,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ABSTRACT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s, which had been launched for the purpose of training the lawyers to settle the legal disputes professionally and effectively, had been done on paper and on site from September through October 2012. Based on not only the basic materials for the evaluation such as evaluation standard, manual, and questionnaire but also the problems revealed during the evaluation, this study intended to show the problems of the evaluation clauses of the law school library which is the basis for the professionalism and diversity of law education and suggest the remedies for them. This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clauses need to be made considering the scale of each law school rather than suggesting the same quantitative standard in every law school and to be more specific rather than abstract. Especially, to manage the law school library efficient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plan and practice the idea of developing such as the specialization and to prepare the idea of operating the law school library through the law school members. Additionally, it is desirable that the chapter of the library exists separately and the library facilities are evaluated together with the other school facilities. Lastly,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appropriate model as the norm to each school according to the school scale.

Keywords: Law school library, Law school, Approval standard, Law school library evaluation

* 서강대학교로콜라도서관 관리운영팀장,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조사위원(jaeyoung@sogang.ac.kr)

• 접수일: 2013년 2월 19일 • 최종심사일: 2013년 2월 27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009년 3월 전국 25개 대학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함에 따라 국내에도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즉, 다원화·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풍부한 교양과 사회 현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 법조인, 민사·형사 등 전통적 분야 외에 조세·환경·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조인,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안목을 갖춘 경쟁력 있는 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¹⁾

따라서 이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비롯한 인가 초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관심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본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법학교육 및 교육과정의 질적 향상과 유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라고 여겨진다.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또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전문적 인력의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학관련 자료를 비치하고 다양한 관련 정보 및 정보활용교육을 제공하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은 크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필수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도서관은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와 평가를 위해 신축되거나 기존 건물이 꾸준히 확충되었으며 사서들의 충원도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직 수업과 연계된 법률이론과 실무관련 정보의 검색 및 활용, 고가에 구입되고 있는 다양한 법률관련 Web-DB의 이용, 그리고 이를 위한 사서들의 교육활동을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 관련 평가기준에 대한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는 법학전문도서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며,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1) 신인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집(2007. 5), pp.506-507.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도서관 관련 지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즉, 법학전문도서관 평가를 위한 관련조항에 대한 지표와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보다 타당성있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평가기준’²⁾과 ‘평가매뉴얼’³⁾ 그리고 ‘질의응답집’⁴⁾을 기초로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을 파악하였다. 또한, 2012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진행된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서면평가 및 현지평가,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6영역(교육시설) 담당 조사위원간 논의,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 담당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는 기존 평가조항을 전면적으로 수정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준비·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재의 평가조항을 가능한 유지하되 해당 조항의 지표와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등을 수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에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의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⁵⁾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학교육이 사법시험 과목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초법학교육 및 새로운 문제영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는⁶⁾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및 운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구지

2)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

3)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

4)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질의응답집(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2).

5)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교육이념 (시행 2012. 7.22),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4&efYd=20120722#0000>〉 [인용 2012. 11. 12].

6) 신인섭,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7), p.55.

원 체계 및 인력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도서관은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시설이자 필수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1817년 하버드로스쿨이 개관할 당시 개교를 알리는 기사 내용에 추후 완벽한 법률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기사가 함께 실렸는데⁷⁾ 이와 같은 사실은 법학전문대학원이 효과적으로 교육과 수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법학전문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당시에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Bade는 하버드로스쿨이 대표적인 로스쿨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중요성과 능력 있는 전문사서의 필요성을 인식했던 두 명의 학장이 있었기 때문이며,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도서관이 법학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대한 학장과 교수들의 무지라고 주장하였다.⁸⁾

법학전문도서관은 열람석을 제공하고 장서를 비치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법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 활용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홍명자는 법학전문도서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강의실 교육과 임상교육을 보충하는 역할

둘째, 연구에 필요한 정보지원을 하는 역할

셋째, 지역 내 법률정보 자료실로서의 역할⁹⁾

그러나 변호사시험 위주의 교육이 지속되는 한 법학전문도서관의 기능도 지정 열람석을 제공하는 독서실기능을 벗어나기 어렵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학전문도서관이 학생들에게 1인1석의 개인 열람석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도서관 서고에 열람석을 거의 배치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도 있는 실정이다.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 6.3.1.2(열람공간의 확보)의 평가척도에는 편제완성연도 총 학생정원의 70%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25개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석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학생 1인당 열람좌석수가 1.97석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많은 도서관들이 법률정보서비스보다 열람석 제공에 보다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이 법률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협력을 통한 활용방안의 구상과 수업 및 연구와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도서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의 취지와 의미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7) Arthur C. Pulling,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43, No.1(1950), p.1.

8) Edward. S. Bade, "Quo Vadimus?,"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2(1949), p.51.

9) 홍명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353-354.

2.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의 방향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원에 걸 맞는 교육과 연구를 뒷받침하고 이와 같은 과정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도서관 관련 설치인가 심사기준¹⁰⁾ 과 평가기준¹¹⁾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법학전문도서관 설치인가 심사기준과 평가기준 비교표

평가영역	설치인가 심사기준(2007 .10. 30.)			평가기준(2011. 11)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6. 교육 시설 (102점)	6.3 법학전문도서관의 설치여부(합격/불합격)	6.3.1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P/F	6.3.1.1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6.4 법학전문도서관의 열람석 규모 (7)	6.4.1 학생정원대비 열람석의 70% 이상 확보	7	6.3.1.2 학생들의 강의 및 시험준비를 위해 필요한 열람 공간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 총 학생정원의 70%를 한변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보유 - 편안하게 몰입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확보	
				6.3.1.3 법학전문도서관 서고의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수용공간이 충분한지 - 서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편의를 고려하는지	
	6.5 법학관련 도서 확보정도(45)	6.5.1 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관련 도서가 다수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15	6.3.2.1 법학전문도서관 내에 충분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소장도서 7만권 이상	
				6.3.2.1 법학전문도서관 내에 충분한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지정도서 목록 100종 이상 관리	
		6.5.2 향후 법학관련 도서의 확보계획	10	6.3.2.4 도서구입계획이 연차적으로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평가함 - 매년 도서계획 수립 여부 - 도서구입계획 담당자 지정 여부	
				6.3.2.2 소장도서 중 법학도서의 비율, 종수, 외국도서의 비율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최근 5년 내 발간서적 20% 이상	
6.3.2.3 단행본 이외에 학술저널 및 전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 50종 이상					
6.5.5 법학전문도서관에 비치된 법학관련 도서들의 충실성	5	5	6.3.2.2 소장도서 중 법학도서의 비율, 종수, 외국도서의 비율을 적절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법학도서 비율 3/4 이상 - 외국법학도서 비율 30% 이상		

10)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 10. 30), p.9.

11)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 매뉴얼(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 pp.128-134.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6.6 법학전문사서 확보여부(6)	6.6.1 전문사서의 확보 (1급 사서자격증 소지)	3	6.3.1.4 도서관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1급 전문사서 1인 이상 확보 - 전문사서 포함 3인(입학정원 50명 이하 2인)
	6.6.2 법학전문도서관의 충분한 직원 확보 여부	3	
6.9 법률데이터베이스(10)	6.9.1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 확보 종수	5	6.3.2.3 단행본 이외에 학술저널 및 전자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 Web DB 3개국 3종 이상
	6.9.2 법학전문도서관의 Web-DB의 다양성	5	

즉, <표 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평가기준에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위해 제시되었던 심사 기준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어 있으며 필요한 내용이 일부 보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 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척도와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ABA의 법학전문도서관 기준¹²⁾

조항	내용
Standard 601 (일반규정)	a. 법학전문도서관은 교육활동의 효과적인 운영 즉, 교육, 연구, 서비스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로스쿨도서관을 설치해야 한다. b.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육, 연구, 서비스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해 충분한 재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c. 로스쿨은 도서관에 최신기술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tandard 602 (관리)	a. 법학전문도서관의 발전과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로스쿨이 행정적으로 독립되어야 한다. b. 학장과 도서관장은 도서관 정책 수립 시 교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도서관서비스 및 장서개발에 책임을 진다. c. 법학전문도서관장과 학장은 직원의 선발, 서비스의 제공, 장서개발 및 유지에 책임을 진다. d. 법학전문도서관의 예산은 로스쿨 예산의 일부로 배정되고 로스쿨 예산과 동일하게 운영 된다.
Standard 603 (관장)	a. 법학전문도서관은 관리에 있어 전적인 책임을 가진 전임관장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b. 법학전문도서관장의 선발과 유지는 로스쿨에서 한다. c. 법학전문도서관장은 법학 및 문헌정보학 복수학위가 있어야 하며, 도서관 경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 d.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학전문도서관장은 법학과 교수의 지위를 부여한다.
Standard 604 (직원)	법학전문도서관은 적절한 도서관 및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능하고 충분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
Standard 605 (서비스)	법학전문도서관은 로스쿨의 교육과 연구, 그리고 서비스프로그램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와 깊이가 있는 참고봉사, 이용자교육, 서지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Standard 606 (장서)	a. 법학전문도서관은 도서관에서 접근이 가능한 핵심장서를 제공해야 한다. b. 핵심장서의 제공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은 보유나 접속 등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장서를 제공해야 한다. (1) 학생들의 연구 및 교과과정을 위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며, 교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자료 (2) 교수들에 대한 교육, 연구 그리고 서비스를 위한 장서 (3) 법학전문대학원의 특별한 교육, 연구,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서 c. 법학전문도서관은 공식적이고 정기적으로 갱신되는 명문화된 장서개발계획이 있어야 한다. d. 법학전문도서관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접근 및 이용하기 위한 적절한 공간과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12)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2013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Chapter 6 : Library and Information Resources)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cations/misc/legal_education/Standards/chapter_6_2012_2013_aba_standards_and_rules.authcheckdam.pdf> [cited 2012. 11. 2].

〈표 2〉의 ABA기준을 보면 법학전문도서관을 별도의 장(Chapter 6: Library & Information Resources)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운영을 위한 대학원 구성원의 역할 및 협력, 서비스 제공, 장서개발계획에 대한 운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의 규모, 위치 그리고 디자인 등 시설에 관한 부분은 7장 시설(Chapter 7 :Facilities)부분에 연구시설을 포함한 여타 시설들과 함께 다루고 있다. 즉, 702항(법학전문도서관)에 ‘법학전문도서관의 물리적 시설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교수와 학생 정원, 그리고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장서·직원·설비와 시설 등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하며 충분한 규모로 적절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¹³⁾고 명시되어 있다.

〈표 3〉은 김원만, 이지연¹⁴⁾이 제시한 법학전문도서관 평가항목이다.

〈표 3〉 평가영역별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항목
계획수립 및 달성	1. 법학전문대학원의 연간계획 수립 여부 및 달성계획 - 소장자료 확보, 시설확충 등
시설	1. 정원대비 개인열람석의 확보 비율 2. 개인사무함 설치여부 및 정원대비 비율 3. 법학전문대학원의 수업 지원 시설의 가능 4. 정보통신시설(컴퓨터 사양 및 네트워크 속도)의 성능 5. 이용자 요구조사를 통한 편의시설의 확충 현황
인적자원(사서)	1. 총 직원(사서)의 수 2. 직원의 고용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3. 법학과 출신의 법학전문사서의 수 4. 사서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5. 직원의 전문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여부 6. 법학전문도서관 근무기간
소장자료	1. 자료 형태에 따른 총 자료의 수 2. 연간 추가 확보한 자료의 수 3. 각 소장자료의 형태별 종의 수 4. 각 소장자료의 발행기간에 따른 수
정보이용	1. 기간별 대출 도서의 수 2. 최근 1년간 수집된 도서의 대출 현황 3. 기간별 전자형태의 자료 및 Web-DB의 이용 건수 4. 기간별 법학전문도서관 이용자 수
정보서비스	1. 이용자 교육 실시여부 및 횟수 2. 이용자 교육의 내용 및 만족도 3. 사서의 주제전문서비스 및 참고봉사 서비스 제공 현황

13) American Bar Association, 2012-2013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Chapter 7 : Facilities),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cations/misc/legal_education/Standards/2012_2013_aba_standards_and_rules.authcheckdam.pdf>

14) 김원만, 이지연,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2010), p.181.

즉, <표 3>과 같이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물리적이고 양적인 기준과 함께 질적인 내용의 항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양적 기준과 함께 질적 기준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장서 수나 열람석, 또는 공간의 규모 등은 대학원별 학생규모가 감안된 평가지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은 모의법정, 강의실, 세미나실 등 공간구성만으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시설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즉, 현재의 평가기준과 같이 물리적 시설을 의미하는 '교육시설' 영역에 여타 시설의 일부와 같이 다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를 별도 조항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부분의 경우 대학원내 다른 시설들과 함께 물리적 시설 부분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Ⅲ. 법학전문도서관 평가 기준 분석

1. 평가기준 항목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6.3.1.1 법학전문도서관 개요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개요 부분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¹⁵⁾과 시행령 제10조¹⁶⁾에 기초한 법령사항으로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평가지표이다. 따라서 해당 사항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Pass)과 부적합(Failure)으로 판정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표를 위한 근거자료인 '도서관 이용규정'이나 평가척도인 '충분한 공간의 확보'의 경우 기준의 모호성으로 실제적인 평가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초가 되는 지표인 만큼 <표 4>와 같이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를 보다 구체화하고 전문도서관으로서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충분한 공간의 확보여부는 6.3.1.2(열람공간)와 6.3.1.3(서고공간)에서 다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6.3.1.1 조항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는 6.3.1.1 현재조항과 수정 후를 비교한 것이다.

15) 제17조(물적기준) ①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4&efYd=20120722#0000>> [인용 2012. 10. 30].

16) 제10조(교육시설) 법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을 말한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2&efYd=20110405#0000>> [인용 2012. 10. 30].

〈표 4〉 법학전문도서관 개요 부분의 현재 내용 및 수정 후 비교표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현재	6.3.1.1 법학전문도서관 개요	법학전문도서관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1.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전용공간 배치도 2.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정	충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충족	독립된 건물임을 요하지 않으며, 대학도서관의 일부로서 분개된 구역에 독립된 공간을 확보한 경우도 포함
수정 후	6.3.1.1 법학전문도서관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략을 평가함	1. 법학전문도서관 자체 운영규정 2. 법학전문도서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회의록 3. 특성화와 연계된 활동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으로부터의 자료수집 현황 및 협력)	1. 법학전문도서관의 독립적 운영여부와 교수, 학생, 그 리고 사서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도서관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활동 여 부를 파악함 2. 법학전문대학원 특성화부 문과 연관된 활동을 포함 한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시행여부 3. 법학전문도서관 홈페이지 내용의 충실성 및 관리	법학전문도서관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법학 전문대학원 구성원간 협력을 파악함

즉, 〈표 4〉와 같이, 법학전문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향후 발전 방안의 수립여부로 평가지표를 수정하고 이를 근거로 자체 운영규정, 운영위원회 활동, 그리고 특성화 분야와 연계된 활동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이 복잡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목적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 도서관, 학생간의 공통된 인식 및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원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통해 역할을 조정하고 발전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원의 특성화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발전방안도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내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를 위한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남대학교법학전문도서관의 ‘공익인권분야’ 자료수집과 정보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강대학교법학전문도서관의 경우 총 장서의 약 30%를 특성화 분야인 기업 및 금융법 관련 장서로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홈페이지 관리의 경우, 가상공간을 이용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감안해 추가할 필요가 있다.

나. 6.3.1.2 열람공간의 확보

본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강의 및 시험 준비를 위한 열람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열람공간의 확보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1.2 학생들의 강의 및 시험준비를 위한 열람공간의 확보	학생들의 강의 및 시험준비를 위해 필요한 열람공간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함	법학전문대학원 열람공간 배치도 및 면적 현황	1. 편제완성연도 총 학생정원의 70%를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보유 여부 2. 편안하게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위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충족)	1. 열람석비율은 편제완성연도 총 정원 기준 2. 열람공간은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 도서관 전용공간에 한하지 않음 3. 학습에 몰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주변소음, 채광, 편의시설, 노트북 전원, 사물함 배치, 강의실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본 조항의 평가척도는 일률적으로 편제 완성연도 총 학생정원의 70% 이상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평가척도는 대학원별 규모를 감안한 학생 1인당 열람석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또한, 6.3.1.1 조항의 평가척도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분한 전용공간에 대한 내용을 이 부분에 포함시키고 평가척도 또한 학생 1인당 도서관 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함께, 서고와 열람실이 분리되지 않도록 해석지침에 서고내부에 일정정도의 열람석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다. 6.3.1.3 서고공간의 적절한 확보

본 조항은 현재, 그리고 향후 법학전문도서관에 구입될 장서를 위한 서고공간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서고공간의 확보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1.3 법학도서관 서고공간의 적절한 확보	법학전문도서관 서고의 공간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함	1. 도서관 서고면적 및 서가규모를 포함한 장서배치도 2. <개산식> 소장 책수(A) 현재 소장면적(B) 권당 필요면적(C=B/A) 향후 구입예정도서(D) 추가 소장면적(E=D×C) 총 필요면적(B+E)	1. 장서 수용공간이 충분한지 여부(확보 예정도서 포함) 2. 이용자의 서고접근성이 용이하고, 편의를 고려하는지 여부 (위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충족)	1. 수용공간의 충분성은 이미 확보한 서적뿐만 아니라 향후 확보하게 될 예정도서를 기준으로 계산함. (확보 예정은 계획을 말하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2. 소장 책 수는 물리적 공간을 차지해야 하므로 e-book은 포함하지 않음 3. 서고면적은 공유공간(이용자, 자료, 직원용 공간을 제외한 복도, 계단, 현관홀, 로비, 엘리베이터, 화장실, 휴게실, 기계실 등 부대시설공간)을 제외한 공간을 말함 4. 서고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은 서고의 배치, 이용자의 동선, 복사기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본 조항의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의 경우, 권당 필요면적은 현재 소장 책 수를 소장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권당 필요면적이 도서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서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도서관기준에는 개가식의 경우 자료공간의 기준을 서가 1개당 3.92~5.4㎡로 제시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소장면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련한 내용의 해석지침에 서가간의 간격을 90~120cm(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을 경우 최대치)정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평가척도와 해석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확보예정도서 또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 총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1인당 장서 수 또는 대학원 규모별로 차별된 장서확보기준을 적용해 최소 3년 또는 5년 등 기간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 6.3.1.4 필요인력의 확보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전문사서를 포함한 관리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필요인력의 확보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1.4 도서관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필요인력의 확보	1.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의 수 2. 행정직원 0명 (1급 사서자격증 소지자 포함)	도서관 행정직원 명단 및 전문사서의 자격증 사본	1. 1급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사서 1인 이상 확보 여부 2. 전문사서를 포함한 행정직원 3인(입학정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2인) 이상 (위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충족)	1. 학생정원 50명 이하 대학의 경우 전문사서 1명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충족 2. 전문사서 및 행정직원은 소속과 상관없이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함

법학전문도서관이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확보와 이들에 의한 활동이 가장 기본이 된다. 따라서 <표 7>의 평가지표와 평가척도 내용 중 ‘행정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전문도서관이라는 점과 많은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해 ‘사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리 인력의 성격 즉, 정규직, 계약직, 조교, 사환 등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해석지침에 첨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관리인원 3인 또는 입학정원 50명 이하 2인으로 규정하기보다 사서 1인당 봉사대상자

17)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53.

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전문성 판단의 경우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1급 정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법학주제전문사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법률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령과 법률 문헌, 법적 쟁점 등 법학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대부분 법학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를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학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법학주제전문사서의 경우 법학 관련 학사 또는 석사과정을 이수한 사서자격증 소지자로 해석할 수 있지만, 향후 이들을 포함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화된 자격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 국내 대학도서관계의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논의 속에 법학주제전문사서 양성 및 자격기준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서관 관련 단체 및 협회 등에서도 법학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과 자격기준 그리고, 재교육 방안 등에 대한 해결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평가척도에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주제전문사서의 재교육 및 활동(교육/세미나 참석 횟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과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사서의 교육 내용과 횟수, 그리고 참가자 현황, 즉 Web-DB를 비롯한 정보활용교육에 대한 평가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평가지표 3.5.1.2에 '법률정보조사'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외국의 사례¹⁸⁾와 같이 법학전문사서가 이를 담당하는지 여부와 수업내용, 만족도 등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해석지침에 소속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표현은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도서관 직원의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마. 6.3.2.1 소장 장서의 충분성

법학전문도서관에 충분한 장서가 소장되어 있는지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8>과 같다.

법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다양한 법률관련 사항을 효과적으로 연구·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모든 도서관을 규모에 관계없이 7만권 이상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도서관에 장서 7만권이 이미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장서의 질적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평가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표 9>와 같이 장서의 크기만으로 판단했을 경우와 대학원의 규모를 감안했을 경우의 순위에

18)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ibrary Service, <<http://law.duke.edu/lib/facultyservices#lectures>> [cited 2012. 11. 22].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률적인 장서의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학생 1인당 장서수를 기준으로 평가척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표 8〉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소장 장서의 충분성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2.1 법학전문 도서관 소 장 장서의 충분성	1. 법학서적을 포함한 소 장 장서 의 수 2. 학생들의 활 용 도 가 높은 지정 도서의 관리	1. 도서관 장서 통계 2. 법학전문도 서관 소장도 서의 목록 파일 3. 법학전문도 서관 지정도 서의 목록 파일	1. 2012.2.29.까지 법학서적을 포함하여 7만권 이상 소장하 면 충족 (법학전문도서관 자 체 접근 권한이 있는 e-book 포함) 2. 학생들의 활용도가 높은 지정 도서 목록이 100종 이상 관 리되고 있는지 (2012.2.29.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충분) (위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 면 충족)	1. 소장도서는 법학도서에 한하지 않으며 법학전문도서관이 소장하는 모든 서적 을 포함함(법학전문도서관 자체 접근권 한이 있는 e-book을 포함함) 2. 법학전문도서관의 서고가 아닌 공간에 있는 경우에는 소장도서로 보지 않음 3. 국내외 주석서 및 교과서류는 학생들의 학습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하며, 주요 단행본 교과서는 교수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필요한 경우 여러 권을 소장하고 있어야 함

〈표 9〉 법학전문대학원 총장서수와 학생1인당 장서수의 순위 비교

총장서수	순위	학생 1인당 장서수	순위
138,116	1	306.9	16
117,948	2	655.3	2
96,355	3	803.0	1
93,918	4	447.2	12
93,231	5	259.0	20
92,480	6	256.9	21
90,815	7	302.7	17
90,344	8	251.0	22
88,630	9	590.9	6
87,384	10	364.1	13
87,232	11	290.8	18
86,912	12	362.1	14
85,634	13	285.4	19
85,310	14	237.0	24
85,143	15	236.5	23
84,714	16	564.8	7
83,874	17	466.0	11
83,657	18	232.4	25
80,275	19	535.2	8
77,100	20	514.0	9
75,777	21	631.5	3
73,293	22	349.0	15
73,018	23	608.5	4
72,873	24	607.3	5
72,105	25	480.7	10

또한, 지정도서의 경우 실효성보다 형식적인 조항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는 만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지정도서의 활용여부 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강의계획서의 참고문헌을 학기 시작 전에 검토하여 지정도서로 확보하고 이를 수업과정에서 활용을 유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모든 대학원이 특성화 분야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도서관과 수업, 그리고 이용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특성화부분과 관련된 장서의 질적 평가방안 즉 별도관리 및 활용현황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추후 공간의 안정적 확보와 장서의 질적 유지를 위해 전체장서 대비 연간 폐기자료 비율을 추가하고,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를 평가척도에 추가해 법학전문도서관의 장서확보를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바. 6.3.2.2 법학도서의 비율, 종수, 외국법학도서의 비율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소장도서 중 법학관련 자료의 내용과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법학관련 자료의 내용 및 질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2.2 소장도서 중 법학도서의 비율, 종수 외국도서의 비율	1. 법학전문 대학원 보유 장서 내역 2. 신규구입 서적 중 최신 서적 비율 3. 외국 법학 도서의 비율	1. 도서관 장서 통계 2. 전문도서관 소장도서의 목록 파일 3. 외국 법학 도서 통계	1. 소장도서 중 법학도서의 비율이 3/4 이상 되는지 여부 2. 설립인가 이후 신규 구입한 서적 가운데 최근 5년 내(2007.1.1.~2011.12.31) 발간된 최신서적이 20% 이상 차지하는지 3. 외국 법학도서의 비율이 30% 이상 되는지 (두 가지 이상의 평가요소를 만족하면 충족)	1. 법학도서의 비율, 설립인가 이후 신규구입 서적 중 최신서적 비율, 외국 법학도서 비율이 너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므로 일정한 최소기준만을 제시함 2. 법학도서는 DDC 340, KDC 360번대 분류도서를 의미하며 단행본과 저널을 포함함, 비율을 따짐에 있어서는 도서의 권수를 기준으로 함. 외국도서의 복사본은 외국도서에 포함되지 않음. 3. 신규구입도서는 기증받은 도서도 포함하며 반드시 법학도서로 한정되는 것은 아님 4. 인가시점은 2008년 9월 1일을 말하며, 최근 5년은 2012평가의 경우 2007년.1.1부터 2011.12.31.까지를 의미함. 출간연도만 표시된 도서는 그해 12월 31일에 발간된 것으로 봄

본 평가의 법학도서에 대한 해석지침을 보면 DDC 340, KDC 360번대에 분류되어 있는 도서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도서의 경우 법학과 연관된 도서임에도 해당 분류번호에 포함되지 않는 도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자료를 합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본된 잡지의 경우에도 등록되었을 경우 책자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 6.3.2.3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충분한 확보

법학전문도서관에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가 충분하고 적절하게 소장되어 있는지에 관한 평가 항목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11>과 같다.

<표 11>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학술저널 및 전자자료의 확보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2.3 학술저널 및 전자 자료의 충분한 확보	1.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 총 0종 확보 2. Web-DB 총 0개국 0종 확보	전자저널 및 데이터베이스 목록	1. 학술저널은 전자저널(Web-DB에 포함된 것은 제외)을 포함하여 50종 이상 확보하고 있는지 2. Web-DB는 3개국 3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지 (두 가지 평가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충족)	1. 전자저널은 국내·외를 묻지 않음. 2.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3개국 이상이어야 하며, 3개국 미만인 경우에는 종수와 상관없이 미흡으로 평가함

본 조항의 평가척도를 보면, 학술저널 종수 산출방법의 경우 Web-DB에 포함된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에 제출된 각대학원의 서면평가자료를 분석해 보면 <표 12>와 같이 학술저널 종수 산출시 Web-DB의 법학 관련 e-journal을 합산한 대학도서관들이 많아 편차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법학전문도서관 제출 학술저널(전자저널 포함) 종수

분석 결과	종수
최대값	3,707종
상위 10%	2,605종
평균값	862종
하위 10%	125종
최소값	57종

따라서, 전자저널 및 Web-DB에 대한 보다 명확한 구분과 정의 그리고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평가척도로 제시되고 있는 Web-DB의 3개국 3종 이상 확보는 전문도서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최소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가로 구입됨에도 Web-DB의 활용은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6.3.1.4 필요인력의 확보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전문사서에 의한 지속적인 활용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연계해 Web-DB의 활용정도 즉, 이용자들이 의한 이용건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 6.3.2.4 도서구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 도서구입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 및 이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항에 대한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은 다음 <표 13>과 같다.

<표 13>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지표 ; 도서구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조항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해석지침
6.3.2.4 도서구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연간 도서 구입계획 의 수립 2. 도서구입 계획 담당 자의 지정	1. 최근 5년 간 신규 구 입한 도서 목록 파일 2. 도서구입 계획 담당 자 명단	1. 매년 도서구입 계획의 수립 여부 2. 도서구입계획 담당자가 지정 되어 있는지 여부 (두 가지 평가 요소를 모두 만족하면 충족)	1. 도서구입계획을 수립하고 구매를 담당하는 직원 또는 부서가 있어 일정한 계획에 따라 도서의 구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평가 2. 교수들의 요청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도 도서구입계획으로 평가할 수 있음 3. 도서구입의 계획 및 시행 담당자의 인적사항, 업무상세 등을 서술함 4. 최근 5년간 신규 구입한 도서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일(2012년 평가에는 2011.12.31.)로부터 기산하여 5년 전부터 기산하나, 다만 그 기산점이 인가시점인 2008년 9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인가일을 기준일로 함)

본 조항은 법학전문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전략과 연관이 있다. 즉, 앞에서 언급한 6.3.1.1 법학전문도서관 개요 조항을 ‘법학전문도서관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으로 수정한 후 특성화와 관련된 장서구입 계획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많은 도서관들이 장서구입이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로 법학전문도서관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독자적으로 장서확보를 위한 계획과 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해석지침 2항의 ‘교수들의 요청’은 이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교수 및 학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집에 언급되어 있는 ‘도서구입계획 담당자의 사서자격증 소지 여부를 반드시 요하지 않는다’¹⁹⁾는 내용은 도서 선정 및 계획을 포함한 장서개발의 전문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2. 기타

앞에서 제시한 각 조항별 개선사항과 함께 법학전문도서관의 활성화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평가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우선, 법학전문도서관간 협력방안 마련 및 노력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법학전문도

19)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질의응답집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2), p.262.

서관이 똑같은 장서를 구축하기보다 핵심장서와 특성화 분야 장서를 구축하고 도서관간 협력을 통해 자료교환 및 정보, 서비스 등의 협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협의회 활동의 강화를 통해 보다 구체화된 협력방안 구상 및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노력이 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학전문도서관의 평가항목을 현재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도서관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0조에 언급되어 있는 필수 교육시설인 강의실, 연구실,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등 한 번의 투자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과는 달리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차지하는 공간비율도 높다. 또한, 대학원 교육의 전문성과 질적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 운영전략이 필요한 특수시설이다. 이와 같은 중요성을 인식해 ABA에서도 법학전문도서관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법학전문도서관 시설에 대한 부분은 모의법정을 비롯한 법학전문대학원의 나머지 공간 및 시설 등과 함께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항목을 확대·재조정해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고 도서관 시설 및 공간에 대한 평가는 여타 대학원의 기본시설들과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많은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인가시점에 보다 많은 정원확보를 위해 교육시설에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열람석이 법학전문대학원 총학생수의 300% 이상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대형강의실 등을 비롯한 대학원내 다른 교육시설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추후 평가에서는 입학정원을 비롯한 대학원의 규모 및 현실적 상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학원 입학정원이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편차가 큰 만큼 대학원 규모별 법학전문도서관의 우수 또는 모범사례를 발굴해 이를 기준으로 일정한 표준을 제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IV. 결 론

많은 기대를 안고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본래의 취지대로 다양한 분야의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즉, 시험위주와 암기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법학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활용한 깊이 있고 전문화된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법학전문도서관은 이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 연구의 전문성을 높이고 내실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는 시설로서의 평가 항목 중 하나가 아닌 현재 상황에 대한 지표와 함께 중·장기 전략 및 이행과정이 포함된 지표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수업을 포함한 교

수 및 학생들의 연구와 기타 제 시설들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 등 보다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이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평가조항별 평가지표, 근거자료, 평가척도, 그리고 해석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선방안의 제시는 현재의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조항에 대한 내용이 이미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적인 교체를 통해 혼란을 초래하기 보다는 수정과 문제점 보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한 수정방안의 제시는 현재 법학전문도서관에 대한 평가항목을 보다 내실 있고 균형 있게 만들어 줄 것이다. 특히, 정량적 지표에 있어 일률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하기 보다 중·소 대학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총 정원을 기준으로 하도록 제시하였으며, 현재의 상황과 함께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특성화 분야를 포함한 발전방안 및 전략 등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이와 같은 평가기준의 개선은 법학전문도서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원만, 이지연. “법학전문도서관 평가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2010), pp.165-183.
- 교육인적자원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공고,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2007.10.30), pp.1-1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4&efYd=20120722#0000>> [인용 2012. 10. 30].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2&efYd=20110405#0000>> [인용 2012. 10. 30].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질의응답집.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2012.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
-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매뉴얼. 서울 :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2011.
- 신인섭.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6

- 집(2007. 5), pp.487-512.
- 신인섭. 우리나라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7.
- 홍명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도서관의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2006), pp.345-373.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American Bar Association(ABA), 2012-2013 ABA Standards and Rules of Procedure for Approval of Law Schools, <http://www.americanbar.org/content/dam/aba/publications/misc/legal_education/Standards/chapter_6_2012_2013_aba_standards_and_rules.authcheckdam.pdf> [cited 2012. 11. 2].
- Bade, Edward. S. “Quo Vadimus?,” *Journal of Legal Education*, Vol.2(1949), pp.41-52.
- Pulling, Arthur C., “The Harvard Law School Library.” *Law Library Journal*, Vol.43, No.1(1950), pp.1-11.
- Duke University School of Law Library Service, <<http://law.duke.edu/lib/facultyservices#lectures>> [cited 2012. 11. 2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4964&efYd=20120722#0000>> [cited 2012. 10. 30].
-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Law School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1972&efYd=20110405#0000>> [cited 2012. 10. 30].
- In-Seob, Shin. “A Study o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Law School Act of Korea.” *Law Review*, Vol.26(2007. 5), pp.487-512.
- In-Seob, Shin. A Study o the Korean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 : Focusing on the Policy Making-Process of Korea Law School System.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yonggi University.
- Korea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Korean Libraries.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Appraisal Manual.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1.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Appraisal Standard.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1.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Law School : Question & Answer. Seoul : Law School Evaluation Committee, 2012.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nouncement : Application for Establishment Authorization of Law School, Ministry of Educati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ress Release(2007. 10. 30), pp.1-10.

Myung-ja, Hong.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Korean Law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37, No.2(2006), pp.345-373.

Won-man, Kim, Jee-Yeon, Lee.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Law School Libra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Vol.27, No.1(2010), pp.165-183.